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35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최민희·김우영·김 윤

김 현 • 이원택 • 이정헌

정동영 · 정진욱 · 주철현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 등등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여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큼.

이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의 선거인은 국민경선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안 제57조의9제1항 등).

- 나. 정당은 국민경선을 한 때에는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9제3항).
- 다. 정당은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 의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7조의9제4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에 제5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9(국민경선 참여의 제한 등) 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이하 이 조에서 "국민경선"이라 한다)의 선거인은 국민경선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 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정당 의 당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원은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③ 정당은 국민경선을 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은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국민경선 선거인 확인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선 선거인 확인 요청서에는 국민경선의 선거인 되려는 사람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국민경선 선거인 확

- 인 요청서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각 정당의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비교하여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국민경선 선거인 확인 요청서의 서식, 국민경선 선거인 여부 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7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 제57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된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57조의9(국민경선 참여의 제한 등) 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이하 이 조에서 "국민경선"이라 한다)의 선거인은 국민경선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정당의당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원은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을 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③ 정당은 국민경선을 한 때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민경선 선거인 확인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선 선거인 확인 요 청서에는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명단을 첨부하 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 항에 따라 제출된 국민경선 선 거인 확인 요청서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각 정당의 국민경 선선거인명부를 비교하여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 선거인이었는 지 여부를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민경선 선거인 확인 요청 서의 서식, 국민경선 선거인 여 부 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1. (생략)
- <신 설>
- 2. ~ 4. (생략)
- ③ ~ ⑦ (생 략)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 6. (생략)
- <신 설>
- ⑨ ~ ⑫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57조의9제3항을 위반하 여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
- 2. ~ 4.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______

--.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57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
- ⑨ ~ ⑪ (현행과 같음)